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2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무역법」 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8호)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항과 국가 안보 위협 등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안 제6조)
- 나. 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안 제12조의4)
- 다.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5 ~ 제12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 통상협정활용과
- 이메일 : byoul200@korea.kr / rudia@korea.kr
- 팩스 : 044-203-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전화 (044) 203 - 4018) 또는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 203 - 5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통상활용지원사업”이란 「대외무역법」 제8조3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5조제2호·제3호·제4호의2 또는 제5호”를 각각 “법 제5조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신청”을 “서면으로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무역거래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협정관세에 대한 통계 등) 법 제8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

2.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

3.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 활용률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협정관세와 관련된 통계

제12조의5(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직 기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부서 또는 상설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인력 기준: 관세사, 변호사, 원산지관리사 또는 무역·통상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시설 기준: 상담, 교육 및 통상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 장비(단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의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한한다)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제3호에서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로서 통상활용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출자한 수출지원 전담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법인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무역기반사업

자

5.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통상활용지원과 관련된 기관·법인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6(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8조의3제5항제2호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통상활용지원기관이 이 영 제1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5항제3호에서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부당집행한 경우

3.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의 영업비밀, 원산지 증빙 자료 등 민감한 통상정보를 지원 목적 외로 무단 유용하거나 유출하여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의7(통상활용지원사업 및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른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및 이 영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7에 따른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제12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기관 또는 법인은 이 영 시행일에 같은 조에 따른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신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현행과 같음) <u>13. “통상활용지원사업”이란 「대외무역법」 제8조3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u>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 <u>제2호·제3호·제4호의2 또는 제5호</u> 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 등의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 <u>제2호·제3호·제4호의2 또는 제5호</u> 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신설>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 <u>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u> 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 등의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 <u>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u> 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u>서면으로</u> 신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u>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u>

<신 설>

⑥ (생 략)

⑦ (생 략)

<신 설>

<신 설>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무역거래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⑩ 그 밖에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협정관세에 대한 통계 등) 법 제8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
2.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
3.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 활용률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협정관세와 관련된 통계

<신 설>

제12조의5(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직 기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부서 또는 상설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인력 기준: 관세사, 변호사, 원산지관리사 또는 무역·통상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시설 기준: 상담, 교육 및 통상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장비(법 제8조의3제1항 제3호의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한한다)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제3호에서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로서 통상활용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출자한 수출지원 전담 법인 또는

<신 설>

<신 설>

기관으로서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법인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5.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 대응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통상활용지원과 관련된 기관·법인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의6(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8조의3제5항제2호
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란 통상활용지원기
관이 이 영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5항제3호에서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통상활용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하거나 부당집행한 경우

3.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의 영업비밀, 원산지 증빙 자료
등 민감한 통상정보를 지원 목적
외로 무단 유용하거나 유출하여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
하여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
반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 제5항에 따라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7(통상활용지원사업 및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른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 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및 이 영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7에 따른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제12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기관 또는 법인은 이 영 시행일에 같은 조에 따른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